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인력 1명(6급 1명), 카지노업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인력 1명(6급 1명), 온라인 여론분석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책홍보용 사진촬영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6급 1명)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나군 1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공연장 운영정상화를 위한 무대인력 1명(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전통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8급1명)을 증원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충청권 수장고 관리 등을 위한 인력 4명(7급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고, 국립국악원에 신축 공연 연습장 관리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노무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조정(임기제 6급 1명)하고, 국립한글박물관에 한글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으로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2명(사무운영9급 1명, 통신운영9급 1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전환(행정9급 1명, 방송무대9급 1명)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정원 1명(위생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행정9급 1명)하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의 분장사무에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2019.12.31.)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존속기한(2020.12.31.)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급상향인력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급을 각각 하향(6급 4명, 7급 5명)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제47조제9항 본문 중 “같다”를 “같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67”을 “6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0”을 “663”으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0”을 “171”로 하고, 행정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30”을 “3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5”를 “678”로 하고, 일반직 계 “668”을 “671”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0”

을 “17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2”를 “87”로 하며, 행정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30”을 “3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6”을 “27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5”를 “27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02”를 “103”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주사보 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공업서기보 1 다음에 “방송무대서기보 1”를 신설하고, 위생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2의3 중 총계 “85”를 “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11”로 하며, 행정서기 “2”를 “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88”을 “5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86”을 “590”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5”를 “589”로 하고, 공업주사보 “8”을 “7”로 하며, 공업주사보 7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3”을 “2”로 하며, 전산주사보 7 다음에 “방송무대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3”으로 하며, 시설서기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사 “150”을 “15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88”을 “5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586”을 “590”으로 하며, 일반직 계 “585”를 “589”로 하고, 공업주사보 “7”을 “6”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6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를 신설하고, 시설주사보 “3”을 “2”로 하며, 전산주사보 7 다음에 “방송무대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3”으로 하며, 시설서기 “2”를 “1”로 하고, 학예연구사 “147”을 “150”으로 한다.

별표 5 중 공업주사 “2”를 “1”로 하고, 공업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를 신설하며, 시설주사 “4”를 “2”로 하고, 공업주사보 “4”를 “3”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3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공업주사 “2”를 “1”로 하고, 공업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를 신설하며, 시설주사 “4”를 “2”로 하고, 공업주사보 “4”를 “3”으로 하며, 공업주사보 3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공업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60”을 “16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59”를 각각 “161”로 하며, 행정주사 “5”를 “6”으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0”으로 하며, 방송무대서기 “15”를 “17”로 하고, 위생서기보 1 다음에 “방송무대서기보 1”를 신설하며, “통신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60”을 “16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59”를 각각 “161”로 하며, 행정주사 “5”를 “6”으로 하고, 행정서기 “11”을 “10”으로 하며, 방송무대서기 “15”를 “17”로 하고, 위생서기보 1 다음에 “방송무대서기보 1”를 신설하며, “통신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8의3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40”을 각각 “41”로 하고, 학예연구사 “14”를 “15”로 한다.

별표 17 중 제50조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⑯ (생 략) ⑰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u> <u>업무</u>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 략)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u>같다</u>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 다. ⑩ ~ ⑱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u>같으</u> <u>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u> <u>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u> <u>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u> <u>할 수 있다.</u> ----- ----- ----- --. ⑩ ~ ⑱ (현행과 같음)
제50조(한시정원) 방송분야 외주 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u>	제50조(한시정원) ----- ----- ----- ----- ----- <u>2023년 2월 28</u>

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며,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일-----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67</u>	• <u>670</u>	+3
일반직 계	• <u>660</u>	• <u>663</u>	+3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u>170</u>	• <u>171</u>	+1
행정서기보 또는 <u>전산서기보</u>	• <u><신 설></u>	• <u>1</u>	+1
사무운영서기보	• <u>10</u>	• <u>9</u>	-1

	.	.	.	
	.	.	.	
전문경력관 담당)	나군(홍보	<u>30</u>	<u>32</u>	+2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75</u>	• <u>678</u>	+3
일반직 계	• • <u>668</u>	• • <u>671</u>	+3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u>180</u>	<u>176</u>	-4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2</u>	<u>87</u>	+5

•	•	•	
•	•	•	
<u>행정서기보</u> 또는 <u>전산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u>30</u>	<u>32</u>	+2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76	277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5	276	+1
일반직 계	102	103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1	+1
방송통신주사보	1	<삭 제>	-1
행정서기보	1	2	+1
방송무대서기보	<신 설>	1	+1

• 위 생서기보 • •	• <u>2</u> • •	• <u>1</u> • •	-1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85</u>		<u>86</u>	+1	
	.		.		.		
	.		.		.		
일반직	계		<u>10</u>		<u>11</u>	+1	
	.		.		.		
	.		.		.		
행정서기			<u>2</u>		<u>3</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88</u>	<u>592</u>	+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86</u>	<u>590</u>	+4
·	·	·	
·	·	·	
일반직 계	<u>585</u>	<u>589</u>	+4
·	·	·	
·	·	·	
공업주사보	<u>8</u>	<u>7</u>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u>2</u>	+2
·	·	·	
시설주사보	<u>3</u>	<u>2</u>	-1
·	·	·	
·	·	·	
방송무대주사보	<신 설>	<u>1</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u>	<u>3</u>	+1
•	•	•	
시설서기	<u>2</u>	<u>1</u>	-1
•	•	•	
•	•	•	
학예연구사	<u>150</u>	<u>153</u>	+3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88</u>	<u>592</u>	+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586</u>	<u>590</u>	+4
·	·	·	
·	·	·	
일반직 계	<u>585</u>	<u>589</u>	+4
·	·	·	
·	·	·	
공업주사보	<u>7</u>	<u>6</u>	-1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u>2</u>	+2
·	·	·	
시설주사보	<u>3</u>	<u>2</u>	-1
·	·	·	
·	·	·	
방송무대주사보	<신 설>	<u>1</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2</u>	<u>3</u>	+1
•	•	•	
시설서기	<u>2</u>	<u>1</u>	-1
•	•	•	
•	•	•	
학예연구사	<u>147</u>	<u>150</u>	+3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	<u>2</u>	<u>1</u>	-1
<u>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3</u>	+3
시설주사	<u>4</u>	<u>2</u>	-2
·	·	·	
·	·	·	
공업주사보	<u>4</u>	<u>3</u>	-1
<u>공업주사보 또는</u>	<u><신 설></u>	<u>1</u>	+1
<u>시설주사보</u>			
·	·	·	
·	·	·	
<u>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1</u>	+1
<u>또는 방송통신서기</u>			
·	·	·	
<u>방송통신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	<u>2</u>	<u>1</u>	-1
<u>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3</u>	+3
시설주사	<u>4</u>	<u>2</u>	-2
•	•	•	
•	•	•	
공업주사보	<u>4</u>	<u>3</u>	-1
<u>공업주사보 또는</u>	<u><신 설></u>	<u>1</u>	+1
<u>시설주사보</u>			
•	•	•	
•	•	•	
<u>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1</u>	+1
<u>또는 방송통신서기</u>			
•	•	•	
<u>방송통신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0</u>	<u>162</u>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59</u>	<u>161</u>	+2
일반직 계	<u>159</u>	<u>161</u>	+2
행정주사	<u>5</u>	<u>6</u>	+1
행정서기	<u>11</u>	<u>10</u>	-1
방송무대서기	<u>15</u>	<u>17</u>	+2
방송무대서기보	<신 설>	<u>1</u>	+1

•	•	•	
<u>통신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0	162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9	161	+2
일반직 계	159	161	+2
행정주사	5	6	+1
행정서기	11	10	-1
방송무대서기	15	17	+2
방송무대서기보	<신 설>	1	+1

•	•	•	
<u>통신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0</u>	• <u>41</u>	+1
일반직 계	<u>40</u>	<u>41</u>	+1
•	•	•	
•	•	•	
학예연구사	<u>14</u>	<u>15</u>	+1

[별표 17]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제50조	• <u>관련 한시</u> <u>정원(준속</u> <u>기한: 202</u> <u>1년 2월 2</u> <u>8일)</u> • •	• <u>관련 한</u> <u>시정원</u> <u>(준속기</u> <u>한: 2023</u> <u>년 2월 28</u> <u>일)</u> • •	